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3.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의 분할지급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안 제24조제3항 신설)

자녀 간 협의하여 수당 수급자를 지정했더라도 협의한 자녀 중 1명이 수당 분할 지급을 신청하면 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됨

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방법(안 제24조의3)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방법(안 별표 5의5)

기본급(위로가산금 포함)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분할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 ~ 12. 12.)

3) 행정규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을 “(협의에 의한 보상금 등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6조의3제1항제1호”로, “보상금을”을 “보상금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로, “보상금수급자”를 “보상금등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상금수급자 지정서를”을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를”로, “보상금수급자로”를 “보상금등 수급자로”로,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의”를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의”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자녀 중 1명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당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4조의2의 제목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제2호”를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6조의3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및 제2항 중 “보상금”을 각각 “보상금등”으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을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등”으로, “국가유공자의 부모는”을 “사람은”으로, “보상금등”을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보상금”을 “보상금등의”로 한다.

별표 5의5 제4호의 월 지급액란 중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 및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

2.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수당 분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동 지급 구분표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추가지원금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개별 지급한다.

나.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협약에 의한 보상금 지급	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법	제24조(협약에 의한 보상금 등 수	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약에 의하여 보상금을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6조	의3제1항제1호----- 보상금 및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	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총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	
리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	----- 보상금등 수급	자 -----	
의 인감증명서(같은 순위 유족	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	-----	-----	
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한	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	-----	-----	
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	-----	-----	
는 등 보상금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 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를	-----	
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	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 보상금등 수급	자로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금수급	-----	-----	
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제24조의3(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

따라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자녀 중 1명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당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6조의3제1항제2호-----
 -- 보상금등-----

 -----.

② -----

 ----- 보
상금등-----
 --.

제24조의3(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u>국가유공자의 부모</u>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u>보상금 등</u>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u>국가유공자의 부모의 보상금</u>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u>보상금 등</u>----- --- <u>사람은</u> ----- ----- <u>보상금 등</u> ----- ----- -----. ② ----- <u>보상금 등의</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